

대구지방법원 2023. 3. 31 선고 2022가단11754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

담당변호사 이춘희,최봉태,송해익,임성우,양상열,곽경화,최보람,이경우,박한결

피고A

변론 종결2023. 3. 17.

판결 선고2023. 3. 31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B 사이에 2021. 9. 27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. 9. 27. 접수 제19793호로 마친
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의 지위 및 신용보증약정의 체결

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유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으로서, 원고는 주식회사 C(이하, 채무자 회사라 한다)이 중소기업은행(이하, 기업은행이라 한다) 및 주식회사 D(이하 D은행이라 한다)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기로 할 때, 채무자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기업은행 및 D은행에 각 발급하였다.

- 아래 -

1) 제1약정

대출기관 : 기업은행

보증번호 : E

보증금액 : 80,000,000원

보증일자 : 2016. 4. 15.

보증기한 : 2017. 4. 14. (이후 2022. 4. 13.로 변경)

2) 제2약정

대출기관 : D은행

보증번호 : F

보증금액 : 219,300,000원

보증일자 : 2018. 4. 12.

보증기한 : 2019. 4. 11. (이후 2022. 3. 10.로 변경)

3) 제3약정

대출기관 : D은행

보증번호 : G

보증금액 : 270,000,000원 (이후 243,000,000원으로 변경)

보증일자 : 2018. 11. 14.

보증기한 : 2019. 11. 13. (이후 2021. 11. 11.로 변경)

4) 제4약정

대출기관 : 기업은행

보증번호 : H

보증금액 : 456,000,000원

보증일자 : 2020. 3. 11.

보증기한 : 2021. 3. 10. (이후 2022. 3. 8.로 변경)

5) 제5약정

대출기관 : 기업은행

보증번호 : I

보증금액 : 190,000,000원

보증일자 : 2021. 3. 22.

보증기한 : 2022. 3. 21.

나. 신용보증약정의 내용

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 채무자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위 약정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, 원고가 대지급한 법적절차비등 모든 부대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였다.

그리고 원고가 정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손해금율은 2019. 4. 1.부터 현재까지 연 8%이다.

다. B의 연대보증계약의 체결

B는 채무자 회사와 원고가 체결한 위 제1약정 및 제2약정과 관련하여 채무자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.

라. 원고의 대위변제 및 구상채권의 발생

채무자 회사는 사업운영 중 위 제1약정, 제4약정, 제5약정과 관련하여 2021. 11. 26. 원금연체로

인한 신용보증사고를, 위 제2약정, 제3약정과 관련하여 2021. 11. 25.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각 발생시킴에 따라, 원고는 채무자 회사를 대위하여 위 제1약정, 제4약정, 제5약정과 관련하여 2022. 4. 22. 기업은행에 737,042,346원(= 제1약정 대위변제금 81,456,188원 + 제4약정 대위변제금 463,601,622원 + 제5약정 대위변제금 191,984,536원)을, 위 제2약정, 제3약정과 관련하여 2021. 12. 27. D은행에 466,499,260원(= 제2약정 대위변제금 221,400,473원 + 제3약정 대위변제금 245,098,787원)을 각 대위변제하였다.

마. 기타 채권의 발생

한편, 채무자 회사는 보증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제1약정과 관련하여 미수위약금 33,310원이, 위 제3약정과 관련하여 미수위약금 539,260원이, 위 제5약정과 관련하여 미수위약금 242,050원이 각 발생하였고, 또한, 원고는 채권보전을 위해 채무자 회사 및 B의 재산에 가압류 등 법적절차비용을 지출하여 대지급금 3,517,106원이 발생하였다.

바. 구상채권의 범위

따라서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게 청구할 구상금 채권 총액은 1,207,873,332원(= 제1약정 대위변제금 81,456,188원 + 제1약정 미수위약금 33,310원 + 제2약정 대위변제금 221,400,473원 + 제3약정 대위변제금 245,098,787원 + 제3약정 미수위약금 539,260원 + 제4약정 대위변제금 463,601,622원 + 제5약정 대위변제금 191,984,536원 + 제5약정 미수위약금 242,050원 + 대지급금 3,517,106원)이고,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총액은 306,407,077원(= 제1약정 대위변제금 81,456,188원 + 제1약정 미수위약금 33,310원 + 제2약정 대위변제금 221,400,473원 + 대지급금 3,517,106원, 이하 이 사건 구상채권이라 한다)이다.

사.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마침

피고와 B은 2021. 9. 27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,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)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(이하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같은 날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. 9. 27. 접수 제1979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)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제1호증 내지 9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

2. 주장

가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구상채권의 채무자인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행위는 B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.

나. 피고의 주장

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는 B의 채무초과사실을 몰랐으므로 사해의 의사나 인식이 없었다.

3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성립

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구상채권은 대위변제일(2021. 12. 27. 및 2022. 4. 22.)경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성립하였다.

그러나 이 사건 구상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(2016. 4. 15.과 2018. 4. 12. 위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)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,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나. 무자력

이 사건 J기관의 신용정보조회회신, 법원행정처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다.

그리고 갑제8,9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경우 합계 68,384,400원¹⁾에 이른다.

1	경상북도 상주시 K 답 2131㎡〈소장 별지목록 제1항 부동산〉	26,637,500원	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각 부동산등기부등본,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각 토지대장 각 참조
2	경상북도 상주시 L 전 2473㎡〈소장 별지목록 제2항 부동산〉	27,203,000원	
3	경상북도 상주시 M 전 1841㎡〈소장 별지목록 제3항 부동산〉	14,543,900원	
합계	68,384,400원		

한편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의 B의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이 최소 669,798,000원에 이른다.

1	D은행 대구지역센터	20,825,000원	2022. 10. 12. J기관의
2	D은행 본부총괄	42,800,000원	사실조회회신 (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채무)
3	N은행 본부총괄	145,000,000원	
4	신용보증기금 본부총괄	302,856,000원	
5	한국무역보험공사	40,500,000원	
7	대구신용보증재단	99,000,000원	
8	○ (주)	18,817,000원	
합계	669,798,000원		

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은 무자력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다. 사해의 인식과 선의에 관한 판단

사해행위와 관련하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.

피고의 선의에 관하여 살피건대,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2016. 1. 15.경부터 수시로 B에게 돈을 빌려주다가 2019. 9. 27.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.

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는 기존의 채권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이득을 얻게 되므로 피고에게 사해의 인식이 없다고 할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신중화

별지

1) 합계 68,384,400원 = 상주시 K 답 2131m² 26,637,500원 (= 2131m² × 개별공시지가

12,500원) + L 전 2473m^2 27,203,000원 ($= 2,473\text{m}^2 \times \text{개별공시지가 } 11,000\text{원}$) + 상주시 M 전 1841m^2 14,543,900원 ($= 1841\text{m}^2 \times \text{개별공시지가 } 7,900\text{원}$).